

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160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3. 5.
제출자 : 속초시장

1. 제안서 주

-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법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 : "15 이상 20인 이내" 를 "15 인 이내" 로 개정(안 제2조 참조)
- 실무 위원회 구성 : "20 인 이내" 를 "25 인 이내" 로 개정 (안 제5조 참조)

3. 참고사항

- 강원 법무 02124 - 121 ('93. 4. 8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첨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1조중 "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" 를 "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"로 한다.

제2조중 "15 인 이상 20 인 이내의" 를 "15인 이내의"로 한다.

제5조중 "20 인 이내로" 를 "25 인 이내로"로 한다.

제10조중 "청소년육성법과" 를 "청소년기본법과"로 한다.

이)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<u>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설치된 ㅇㅇ시(군) 청소년육성지방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	제1조(목적)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<u>동법시행령 제5조의</u> - - - - -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<u>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	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 - - - - - - - - - 15 인 <u>이내</u> - - - - -
② - ③ (생 략)	② - 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실무위원회 구성)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.	제5조(실무위원회 구성) 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25인 이내로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여하는 청소년육성법과 동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0조(준용) - - - - - - - - - - 청소년기본법과 - - - - -